

참고2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

[참고] 취업취약계층의 범주

- ① 저소득층
- ② 장애인
- ③ 결혼이민자
- ④ 북한이탈주민
- ⑤ 위기청소년
- ⑥ 여성가장
- ⑦ 성매매피해자
- ⑧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- ⑨ 갱생보호대상자
- ⑩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
- ⑪ 노숙자

□ 저소득층

인정 범위	- 소득 1분위 ~ 3분위 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(단, 1인 가구는 120% 이하)
확인 방법	①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서 (증빙자료 제출 필요) ②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(증빙자료 제출 필요) ③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검증 (증빙자료 제출 불필요)

□ 그 외 취업취약계층

범주	- 장애인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, 성매매피해자, 위기청소년, 갱생보호대상자, 여성가장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, 노숙인
확인 방법	- 해당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 제출 (증빙자료 제출 필요) ※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검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증빙자료 제출 권장 - 그 외 취업취약계층 중 ①장애인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해당자도 인정 ※ '취업취약계층 범주에 따른 증빙서류 및 자비부담 경비지원' 세부내용 참고

구분	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(6개월 이내 만기 퇴소)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• 15~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·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		
여성가장	구분	첨부서류	
	배우자 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족관계등록부 •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해당자에 한) 	
	배우자 有	가출·행방불명	실종신고서
		장애	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애인복지카드 등 1
		질병	의사의 진단서
		군복무	복무확인서
		학교 재학	재학증명서
		교도소 입소	수용증명서, 형 확정판결문
		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	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
		이혼소송 제기	이혼소송확인서
기타 가족 생계 부양	통·반장의 확인서(검토)		
성매매피해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매매피해여성 쉼터·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		
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부모가족 증명서(읍면동 발급) 		
갱생보호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, 갱생보호법인(민간법인 7개소)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		
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정시설(교도소, 구치소)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		
노숙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련시설(노숙인 쉼터, 상담보호센터 등)에서 받은 추천서 		

